

의안번호	2203604
의 퇴 인	강득구의원
회 답 일	2024.10.30.
추계번호	24C3671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7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)	○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※ 안 제17조제5항에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개별 면담, 강의,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정수반요인에서 제외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가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¹⁾에 따

- 1) 제13조(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·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·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
 3.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
 4.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·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른 정신건강증진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와 그 규모를 추계하기 곤란

○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는 자살예방 상담·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데, 통합 실시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지원 규모 등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

－ 구체적으로, 통합 실시 여부와 학교별 교육 및 사업 특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, 학교 별 기존 경비 활용 여부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을 가정하기 어려움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, 정보 제공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·단체·학교 및 사업장 중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등을 선정·공표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·단체·학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nabo.go.kr